

몰수물의 인계처분(제35조 및 제36조 관련)

물 수 품	처 분	비 고
1. 검찰실무자료	검찰실무자료로 인계	(인계할 검찰사무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)
2. 마약류	○○보건기관에 인계	시, 도 등 보건기관
3. 총기류 가. 사용가능한 권총 나. 군용총기류 다. 엽총, 공기총류	경찰서에 인계 ○○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공매국고귀속	경락자로부터 취득신고각서를 받을 것
4. 포약류 및 수류탄	○○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	
5.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	사용불능, 폐기	
6. 국가유산류	국가유산청에 인계	